“왜 우리만 빠졌나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

집합제한 등 방역 협조 불구 카페·식당 광주시 생활안정자금 제외에 허탈

“취지 공감하지만 교회·홀덤펍도 지원금 주는데…배려 부족한 정책 아쉬워”

“종교시설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주면서 (카페·식당은) 하라는대로 다했는데 왜 안 주나요?”

광주시가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자영업자들에게 100억여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 지침을 묵묵히 따르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챙기지는 못할 망정,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서운함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발표한 ‘제 12차 민생안정대책’은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분야, 4만 1388개의 자영업자와 업체에 127억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 등 집합금지업소 한 곳 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교회·천주교·사찰 등 종교시설에는 1곳 당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법인택시기사·문화예술인 1명 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수영강사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1인당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영업시간을 제한해 운영토록 했던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당장,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와 광주 노래업협동조합 등 노래방 업주들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도 시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휴무까지 해가며 방역 지침을 따른 결과가 이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래연습장업협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의 지원 방침에 반발, 삭발을 하기도 했다.

워낙 대상자들이 많아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원하지 못해 대상에서 빠진 카페 업주들의 경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최근 문을 닫은 김모(30)씨는 “문 여는 게 손해라 영업을 중단하고 공장에 취업해 박스를 조립하고 있는데, 카페는 제외됐다고 들었다”면서 “영업시간 제한, 착석 금지 등으로 손실 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A씨도 “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다”면서 “열심히 정부와 자치단체 지침을 따른 우리는 지원대상에서 항상 빼니 서운하지 않겠냐”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교회와 홀덤팝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방역수칙을 마련할 때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교회의 경우 이날 기준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843명 중 종교모임 관련 확진자가 640명(34.7%)인데다, 개신교 관련 확진자가 626명(33.9%)이라는 점에서 과연 지원해주는 게 맞느냐는 반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교회 등 종교시설 2100곳에 3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선거용 선심성 대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한 달 만 집합금지 업소로 분류된 홀덤펍에도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점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무지구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된 교회에도 지원금을 주는 데 이해하겠냐”면서 “문 닫은지 한 달 된 홀덤팝과 몇 개월동안 문닫은 유흥업소들과 지원액이 같으니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따졌다.

광주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뚜렷한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우선 발굴해 해소하려는데 집중했다”며 “카페와 식당 등의 경우 종사자들이 많아 모두 지원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상무지구 상인 자치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이석기 옥중집필 책으로 독후감 공모전 뒷말 무성

전국공무원노조 진행…적절성 논란

공무원노동조합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책으로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독후감 공모에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의 저서를 선택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 책 내용을 위주로 하는 독후감인 만큼 저자가 누구인지 무슨 상관이냐며 잘못된 선입견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까지 이석기 전 의원이 쓴 옥중수기록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라는 책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중이다. 조합은 공모전 우수자 20명을 선발해 상장과 상품을 줄 예정이다.

공모전 포스터가 광주시청과 5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 나붙으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석기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논쟁 거리로 떠올랐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대상 책으로 적절하냐는 것으로, 그는 지금 징역 9년의 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책은 ‘거대 양당체제를 벗어나려면’, ‘경제의 중심은 민중의 삶’, ‘세습되는 불평등을 바꾸는 힘’, ‘대담한 변화를 위하여’ 등의 주제를 정해 7년이 넘는 수감생활 과정에서 저자의 생각을 정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라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명절 선물’ 벌금 80만원 선고

박차훈(64)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110여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석이나 설 명절 전 90여명에게 16만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5만원 상당의 그릇·과일 세트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

박 회장은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었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금고에서 보유한 회원권을 회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쓸 수 있게 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중앙회장 신분이 상실되고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범행 정도로 볼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례적 명절 선물 제공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 “피고인은 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2위 후보를 5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표심이 바뀌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시자는 없고 교직원만 벌금형 ‘교사 채용비리’ 개운치않은 결론

법원 “진술 신뢰성 부족”…전직 교장 항소심도 무죄

교직원과 공모해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 정규·기간제 교사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한 사립여고 전직 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교장 지시로 점수를 바꿔 순위를 뒤집었다는 교직원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지만 정작 해당 교직원 혼자 범행을 저지를만한 청탁·금품 수수 등의 동기가 밝혀진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개운치 못한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명을 채용하면서 탈락자 6명이 합격자로 뒤바뀌는 채용 비리가 발생했는데, 부탁하고 지시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 비리를 실행한 교직원만 유죄로 처벌받게 된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여고 전직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교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이뤄진 ‘중등교사 임용 선정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B씨와 공모, 채점 결과와 순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뒤바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 지시가 있었다는 B씨 주장을 들어 공모 혐의를 거두지 않았고 A씨 역시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채점 결과를 수정하도록 지시해 특정인을 합격시키도록 공모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B씨가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지시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금전적 이익,청탁 등과 같은 부정한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A씨의 지시나 B씨와의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로는 B씨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진술의 신뢰성에 주목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는 ‘교장의 지시로 합격·불합격자 명단만 바꿔 발표한 뒤 점수를 결과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서는 ‘교장 지시로 점수까지 바꿔 합격자 발표 당시에는 변경된 점수가 확정돼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점수를 변경한 시점에 대한 B씨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국·영·수 과목의 순위표를 교장에게 줬다’고 했다가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생물 과목을 먼저 드리고 다른 과목은 준비되는대로 전달했다’고 하는 등 순위표를 교장에게 전달한 과정에서의 다른 점도 따졌다.

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 A·B씨의 휴대전화, 업무용 컴퓨터 포렌식 분석, 통화내역 분석 등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검찰 고발 이후 2년 뒤에 기소되면서 관련 증거물이 사라져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12804	1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5길4, 다동 1층 106호 [옥당연립] 59.47㎡	아파트	44,000,000 44,000,000	
2020타경 73342	1	광산구 수등로280, 104동 13층 1302호 [신가동,호반리젠시빌] 84.0624㎡	아파트	232,000,000 232,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 12088	1	담양군 가사문학면 연천리 282-1 261㎡[공유자이준호지분14/119전부]	대	9,465,110 9,465,11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동소 284 279㎡[공유자이준호지분14/119전부]	대		
		담양군 가사문학면 반석길 40-4 55.08㎡ 부속건물 부속53.5㎡ 건조장21.6㎡[멸실됨][공유자이준호지분14/119전부]	단독주택		
2020타경 72851 2020타경 73625 [중복]	1	광산구 복호길 54 79.65㎡ 부속건물 축사,변소 31.5㎡[공유자박국환지분2/7전부] 제시외 창고 등 5㎡[제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38,815,200 38,815,2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이동가능컨테이너1동매각제외
		광산구 송대동 465 364㎡[공유자박국환지분2/7전부]	대		
2020타경 73113	1	북구 두암동 829-13 138.5㎡[공유자이순규지분1/3전부]	대	50,205,180 50,205,1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북구 면앙로192번길 18-8 1층61.06㎡ 2층35.73㎡ 부속건물 변소 1.0㎡[공유자이순규지분1/3전부] 제시외 창고 등 66.8㎡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12422	1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1583 774㎡	대	81,270,000 81,270,000	지상소재비닐하우스매각제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 12286	1	광산구 용아로400번길30, 3층 에이동-306호 [하남동,테라스56피크닉몰] 84.946㎡	근린시설	408,000,000 408,000,000	씨엔에스㈜의미납관리비[1,062,210원]신고있음[2020.12.18접수]
[자동차,중기]					
2020타경 72677	1	사용본거지:광산구 신가동 수완로11번길33, 202호[신가동] 등록번호:68노7399 차명:아반떼[AVANTE] 연식:2014[공유자지분윤태경99/100전부.공유자지분최성윤1/100전부] 보관장소:광산구산정동156-3송암주차장	자동차	6,000,000 6,000,000	감정당시주행거리157,211㎞,유효검사기간 2019.12.29~2021.12.28
[기타]					
2020타경 73465	1	곡성군 옥과면 수리 산106-1 6744㎡	임야	708,896,000 708,896,000	일괄매각.목록2~7임차인이토석채취허가득하여이용중.목록7토지만매각.매각제외제시외건물및기기계구등소재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산137 14465㎡	임야		
		동소 산138 9134㎡	임야		
		동소 산140 13838㎡	임야		
		동소 산140-1 1014㎡	임야		
		동소 산142 16264㎡	임야		
		동소 산143 22314㎡	임야		
		동소 639 2704㎡	잡종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2. 18.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2. 25.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신호